



5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6

- 32 []
- 33 []
- 34 []
- 35 [가]
- 36 []
- 37 []
- 38 []

5. ()

6. 가 1 1

가 가 1 4
가 17 ()

가 1 5
가

6 【 】

7 【 】
가 3
1 ()
가
가

2 ()

8 【 1 】
1
(가 1)
가 1
가 1
,

1

(

가

)

가

1

2

1

1

가

11 【

가 2

】

,

3

가

가

3

1

.

,

가

15

2 가

()

가

15

()

1

12 【 】

11 (

)

2

가

, 가

+1%

가

(1) 1 () 3 , 8
) 21 (), 20 (가
)

3 ()

13 【 】

가

(1 가

)

1. 가 5
가 :

2. 가 2()
()
:

3. 가
:

4. 가 1 2
6 가 :

5. 가 1 2
3 가 :

14 【 가 2
3 가

13 () 2 3
가

27 () 2

가

13 () 4 , 5
1

180

180

가

13 (가) 4 5

가

4
가

2

가

가

4

가

가

5

가

가

5

1.

가

2. 1

가

4

6

가

100%

,

1
 13 () 1
 가 1
) 2 , 4 , 5 13 ()
 1 가 가

15 【 가 】
 가

1. 가 가 () 2 1
2. 가 가 가
3. 가 가

1. 1 1
2. 1 2
3. 1 3

16 【 , 가 , 1 6 가
가 가
가

17 【 】

18 【 】

19 【 】
가 2

4

20 【가 】
(
)
(3

21 【 가 】

가

20

(가)

가

1. 가

2. 가 1

가

3. 가 1) 2 (

()

가

(

4. 가 ()

가

(

가

1

)

(

)

1

가

(

)

가

가

20 (가)

가 .

22 【 】

가

2 () 110 ()

가 ,

가

가

5 () 1

5

23 【 】

가

1 가 가

24 【 】

가

13 () 1

2

5

27 () 1

3

10

21 ()

1

7

가
가

7

가

1

+1%

29 【 () 】

() 13 ()

[13 () 2 3 () 4

1

28 ()]

1

(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2,500만원)

① 확정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5년확정보험금 (I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계약 일로부터 만5년 이 되는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2,000만원
만기 확정보험금 (II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이 끝날때까 지 살아있을 때	2,000만원

②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2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2,500만원

③ 일반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3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 급 액	만 2년미만 경과시	25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만 2년이상 경과시	2,500만원

④ 장해급여금 (약관 제13조 제4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제1급	2,500만원
	재해 제2급	1,000만원
	재해 제3급	800만원
	재해 제4급	600만원
	재해 제5급	400만원
	재해 제6급	200만원

⑤ 소득보상금 (약관 제13조 제5호)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 급 액	제1급	매월 200만원씩 36회 지급
	재 해 제2급	매월 100만원씩 36회 지급
	재 해 제3급	매월 50만원씩 36회 지급

주) 소득보상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제단”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장애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종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제4급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p> <p>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p>
제5급	<p>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p> <p>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등급	신체장애
제5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 6 “시력의 뚜렷한 장애”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애, 안구운동 장애, 조절 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헤르츠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궤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발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애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sum \frac{\text{운동종류별 장애후 운동범위}}{\text{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text{비례치}$)가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彎) 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彎)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관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관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관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관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관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
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애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애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위	운동의 종류	A M A 법		
		정상각도	정상운동범위	비례치(%)
어깨	전굴	30	60	-
	후굴	30		
	좌굴	40	80	-
	우굴	40		
좌회전	30	60	-	
우회전	30			
팔꿈치	전굴	90	120	-
	후굴	30		
	좌굴	20	40	-
	우굴	20		
좌회전	30	60	-	
우회전	30			
어깨관절	신전(후방거상)	40	190	50%
	굴곡(전방거상)	150		
	내회전	40	130	20%
	외회전	90		
외전(측방거상)	150	150	30%	
팔관절	신전	0	150	60%
	굴곡	150		
목관절	회내	80	160	40%
	회외	80		
목관절	신전	60	130	70%
	굴곡	70		
목관절	모음	35	80	30%
	확굴	45		
대퇴관절	신전	30	130	33%
	굴곡	100		
	내전	20	60	33%
	외전	40		
회내	40	90	33%	
회외	50			
무릎관절	신전	0	150	100%
	굴곡	150		
발목관절	신전	20	60	70%
	굴곡	40		
	내반	35	60	30%
외반	25			

- 주운동방향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운동종류에 따른 기준 크기
- 정상운동범위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인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재테크안심저축보험
암치료보장특약 약관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14 []

4

가

15 []

5

16 []
17 []

6

18 []

4 【 】

1

5 【 】

6 【 】

가
가

2 ()

7 【 】

8 【 】

()

1

potential)

가
(fixed tissue) , (hemic
system)
가
가
가

11 【 】

(5)

가
(fixed tissue) , (hemic
system)
가
가
가

12 【 】

가 가
(1 ())
1. 가 1 ()
) 2

:

2. 가

) 2 1 (

:

3. 가

4 (, 가) 2 1 (

4

:

4. 가

31) 2 1 (

31

:

13 【 】

12 () 1 1

가
 가 1 () 2
 12 () 1
) 2
 12 () 2
 가 2
 1
 12 () 3
 1 120
 5 가
 4 2 5 1
 5
 180
 12 () 3
 가 5
 12 () 4
 180

(1) _____

(: 가 1,000)

(12 1)

가 1 () 2	1
	1,000
	500
	(, 500 가)
가	1 200

(12 2)

가 1 () 2 ,	1 100

가 ,	1 40

(12 3)

가 4 1 () 2 , 4	3 1 3

(12 4)

가 1 () 2 , 31	1 100
가 , 31	1 40

(2) _____

3
(1993-3 , 1995. 1. 1)

1. ,	C00 - C14
2.	C15 - C26
3.	C30 - C39
4.	C40 - C41
5.	C43 - C44
6.	C45 - C49
7.	C50
8.	C51 - C58
9.	C60 - C63
10.	C64 - C68
11. ,	C69 - C72
12.	C73 - C75
13.	C76 - C80
14. ,	C81 - C96
15. ()	C97

(3) **3** _____

3 (3 3
1993-3 1995. 1. 1
)

1.	C 16
2.	C 22
3.	C 23
4.	C 24
5.	C 33
6.	C 34

(4) _____

3
3 ()
1993-3 , 1995.1.1)

1.	C 50
2.	C 51
3.	C 52
4.	C 53
5.	C 54
6.	C 55
7.	C 56
8.	C 57
9.	C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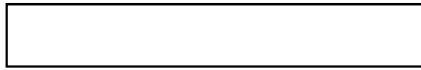
(5) _____

4

3 (1993-3 1995. 1. 1)

1. ,	D 00
2.	D 01
3.	D 02
4.	D 03
5.	D 04
6.	D 05
7.	D 06
8.	D 07
9.	D 09

4



*

.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4

14 []
15 []

5

16 []

1

1 【 】

가 가
가 가
(,)
,)

가
가

2 【 】

3 【 】

4 【 】

가 가

가

13 ()

가

5 []

1

6 []

2 ()

7 []

8 []

1

2

9 []

3 ()

10 【 】

가 (가)
가

3

11 【 가 】

(2 가) ()
(4)
(1)

12 【 】

가

1 120

가 2 1 4

(1) _____

3 1	가 1/1000

(2) _____

.	A00-B99
.	C00-D48
.	D50-D89
.	E00-E90
.	G00-G99
.	H00-H59
.	H60-H95
.	I00-I99
.	J00-J99
XI.	K00-K93
X .	L00-L99
X .	M00-M99
X .	N00-N99
XV. .	O00-O99
X .	P00-P96
X .	R00-R99
XIX. ,	S00-T98
XX.	V01-Y98
.	2 1 1
.	,

()

1. (,)

2.

3. ,

4. ,

5. , (-
) ,

(3)

(2)



*

.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14 []

5

15 []
16 []

6

17 []

3 ()

10 【 】

가 ()
2() 가 ()
가 3 2

11 【 】

가 4 ()
가)
()
(1)

12 【 】

11 ()
1 120
1 가 4
2 1
1

11 ()
가

1

13 【 가 】

가

1. 가
, 가

2.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가

가

1

+1%

5

17 【

】

가

(1) _____

(: 가 1,000)

- (11)

	가
4 (3	1)
	10,000

(2) _____

()

.	A 00 - B 99
.	C 00 - D 48
.	D 50 - D 89
.	
.	E 00 - E 90
.	G 00 - G 99
.	H 00 - H 59
.	H 60 - H 95
.	I 00 - I 99
.	J 00 - J 99
.	K 00 - K 93
.	L 00 - L 99
.	M 00 - M 99
.	N 00 - N 99
.	O 00 - O 99
.	P 00 - P 96
.	R 00 - R 99

()
1. (,)

2.

3. ,

4. ,

5. (-

), ,



가

5 【 가 】

가

가

1. 가

2.

3. 1 (가)

가 5

6

1 1

5

2

, 3

가

1

가

6 【 가 】

1 []
2 []
3 []
4 []
5 []

